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27
----------	-----

발의연월일: 2026. 4. 27.

발 의 자: 최상진 의원

찬 성 자: 이혜숙 의원, 이강무 의원
김순애 의원, 전 정 의원
장원만 의원

1. 주문

-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금지 대상 여부와 범칙금·과태료·이동조치의 적용 구조가 존재함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장에서 다툼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을 정비하여 이륜자동차 등 항목을 명확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일정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불법주정차 금지 대상임.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제3호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범칙금 처분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구조를 두고 있음.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일반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단속 사각지대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해석상 공백과 집행 혼선을 해소하고 주민의 보행권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

4. 이송처

-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최근 도심과 주거지역 곳곳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점유, 횡단보도 주변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장기 방치성 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과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단속 주체와 처분 방식이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역시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행 법률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범칙금 중심으로, 운전자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견인 및 공고 절차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도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이동 조치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기준 아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생활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등 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라.

하나.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및 이동조치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한 현장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단속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보·인계 및 후속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도·횡단보도 주변·소방시설 주변 등 보행안전 취약구간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단속이 가능하도록 협업지침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의회